

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시행세칙

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시행세칙

- 제정일 : 2013년 02월 25일

□

목차

- [1 본문](#)
 - [1.1 제1조\(목적\)](#)
 - [1.2 제2조\(정의\)](#)
 - [1.3 제3조\(운영\)](#)
 - [1.4 제4조\(선발\)](#)
 - [1.5 제6조\(위원회\)](#)
 - [1.6 제7조\(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여부의 기재\)](#)
- [2 부칙](#)

본문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학칙 제31조 제6항 및 제47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일반 학사 학위 이수기준에 추가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.

제3조(운영)

- ①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에서 3, 4학년 과목을 ‘특성화’반과 ‘일반’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총괄책임교수가 책임지고 운영한다.
- ③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‘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 내규’를 정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선발)

- ①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소속 학생 중에서 3학년에 진입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학생을 일정 인원 선발한다. 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일반 과정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5조(졸업요건) ① 학칙에서 정하는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.
- ② 추가적으로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,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괄책임교수로 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다.

제7조(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여부의 기재)

- ①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.
 - 1.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'공학사(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특성화)'로, 영문 학위 명칭을 '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'로 표기한다.
 - 2. 각 증명서에 국문 전공 명칭을 '컴퓨터공학(소프트웨어특성화)'로, 영문 전공명칭을 'Computer Science'로 표기한다. ② 공학인증과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.
 - 1.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'공학사(컴퓨터공학심화 소프트웨어특성화)'로 표기하고, 영문 학위 명칭을 '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'으로 표기한다.
 - 2. 각 증명서 국문 전공 명칭을 '컴퓨터공학심화(소프트웨어특성화)'로, 영문 전공 명칭을 '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'로 표기한다.
- ③ 특성화 트랙 명칭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부칙

부칙(2013.2.25 공포)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